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1-21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0다90241 특허권이전등록등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노씨엔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2167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의 '협약연구개발 과제명'은 '냉동사이클을 활용한 154kV 변압기 냉각장치 제작'으로만 되어 있으나, 그 협약서 및 시방서에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구수행의 전제가 되는 기존 연구개발 실적으로, 피고 회사의 설립자인 원심공동피고 A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연열·폐열·해양온도차에 의한 발전사이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 B가 포함되어 있고, '추진전략 및 방법'란에 '해양온도차 발전 개념을 변압기 온도차 발전으로 변형 가능성 타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 개발 내용의 개략도' 중 '방열기 외포형 냉동냉각장치'에 '변압기 온도차 발전으로 압축기 사용전력 절약형 냉각장치 개발에 활용한다'는 기재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의 수행을 보고하면서, 2006년 3/4분기 보고서에서 '발전사이클 원리를 추가하여 소형 냉각장치를 제작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중간보고서에는 '소형·대형 발전 사이클 냉각장치를 제작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최종보고서에는 '변압기 냉각에는 냉동사이클보다는 발전사이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발전사이클을 본 연구의 신개념 변압기 냉각장치 적용원리로 선정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그 실증실험으로 동인변전소 변압기에 설치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피고 회사와 A은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 변압기 냉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A이 2006. 3. 22. '발전랭킨사이클을 활용한 변압기 냉각장치'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여 2007. 9. 28. 등록번호 C로 그 등록을 마친 후 2009. 3. 1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권리의 전부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특허는 '변압기 냉각을 위하여 냉매 또는 액화가스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발전랭킨사이클(발전사이클)의 원리를 적용하여 작동유체의 순환으로 변압기 절연유의 열을 회수함으로써 변압기를 직접 냉각시켜 냉각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동인변전소 변압기에 설치된 냉각장치는 이 사건 특허가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와 같은 '발전사이클 원리를 이용한



냉각장치' 개발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특허는 이 사건 협약의 수행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협약이 장치 연구개발될 미확정 기술에 관한 연구지원 및 개발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제명에 '냉동사이클'이라는 기술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점만을 근거로 이 사건 협약에서 이루고자 하였던 목적이 냉동사이클을 활용한 냉각장치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는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비 총액이 512,428,000 원이고, 이 가운데 원고가 부담하는 지원금이 378,625,000원이며, 그 중 8,653,374원이 미지급금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8,653,37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중 7,388/10,000 지분(= 378,625,000원/512,428,000원. 1/10,000 미만 버림)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21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